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22
------------	------

발의연월일 : 2017. 5. 31.

발 의 자 : 김민기 · 김병욱 · 도종환  
손혜원 · 송옥주 · 신동근  
신창현 · 안민석 · 오영훈  
유은혜 · 이찬열 · 홍의락  
의원(12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는 학교의 재량휴업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임시공휴일 제도 등을 도입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8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시설의 개선)”을 “(관광 여건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부는”을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로,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u>시설의 개선</u> )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u>확충을 위하여</u>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 ----- <u>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u>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